

빅테크 금융업

1

공약 개요

1.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2.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제 정비

- 동일기능, 동일규제 기본원칙 하에 빅테크 생태계 특성(소비자 접근성, 편의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 적용

3.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 조성

- AI·데이터 거버넌스 및 보안 강화를 통한 데이터 이용 환경 개선
-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금융업 접목 및 확대
- 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 이해상충 방지 방안 마련

2

구체적 분석(또는 법률적 쟁점)

○ 기술(IT)과 금융이 융합하면서 다양한 새로운 핀테크 기업과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음을 감안한 새로운 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의 업권별 중심의 규율체계에서 서비스(기능) 중심의 규율체제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 기존의 IT기업과 금융회사들의 진입규제 정도를 비교하면 IT기업은 너무나도 쉽게 시장에 진입이 가능한 반면,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진입규제의 차이로 인한 당연한 결과로 IT서비스 시장이 훨씬 경쟁이 치열하며 이 경쟁에서 승리한 소수의 IT기업들만이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의 과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그런데 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금융회사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PC 웹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금융회사보다 훨씬 고객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금융회사들이 이들 ‘빅테크 기업’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 국민의힘 공약은 이와 같은 변화와 혁신을 수용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즉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계속 생겨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시키되, 이들 산업에 대한 행위규제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입니다.

3

향후 전망(또는 대응 방향)

○ 신기술을 통해 금융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금융소비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육성 및 규제완화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핀테크 기업들은 현재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다양한 규제완화 정책을 잘 활용하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연구·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기관·유관기관·협회 등의 도움을 받아 정부에 불필요한 행정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 다만 시장에서 충분한 지배력을 가지고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빅테크 기업(대규모 정보통신기술회사(ICT), 소셜미디어, 인터넷 검색엔진, 모바일 메신저 회사 등)이 기존의 앱이나 웹에 금융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행위규제가 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나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 및 관리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고, 이해상충 방지 방안, 금융소비자보호제도 마련 등에 보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 금융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규제산업으로 성장해온 반면, IT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급성장하면서 변화와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업종의 차이는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사고와 행동에도 그대로 배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빅테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관리나 소비자보호 등에 조금 덜 민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금융서비스는 타인의 소중한 재산을 다루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및 제도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업권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이중 규제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빅테크 기업들은 기존 업권 규제와 기능 규제 간


의 충돌 문제나 중복 적용 등은 없는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기존 금융업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 담당변호사



변호사 김도형

 02-3479-5735

 kdhwin00@barunlaw.com